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82
----------	------

발의연월일 : 2024. 11. 19.

발 의 자 : 이철규 · 김선교 · 서일준  
이인선 · 강승규 · 박충권  
김기현 · 구자근 · 박성민  
유상범 · 곽규택 · 송언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한”을 “청구하거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경고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상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화상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대해서는 제113조제4항 및 제1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 7. (생 략)</p> <p>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생 략)</p> <p>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u>청구한</u>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 ----- -----<u>(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u>-----.</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구하거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u>----- ----- ----- ----- ----- ----- -----</p>



<p>② ~ ⑧ (생략)</p>	<p><u>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